

우리나라 학생선수 육성환경의 변천과정 및 발전방안 탐색

우승호 · 진연경* (중앙대학교)

An Investigation of History and Development Plan of Upbringing Environment for Korean Student Athletes

Woo Seung-Ho · Jin Yeon-kyung (Chungang Univ.)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복 이후 실시되어 온 다양한 학교체육정책 중 학생선수 육성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렀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자료를 정리, 분석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학생선수 육성방안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문서상으로는 학생선수의 학업 참여와 증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지속하였지만, 체계적이고 일원화 되지 못한 체육 행정 조직의 문제, ‘체육특기자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명(明)과 암(暗)은 학생 선수가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를 낳으며 문서상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였다. 또한 이 제도는 학교운동부의 비균형적 발전과 각종 대회에서 승리와 우승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선수들을 운동만하는 기계로 변질시켰다. 향후 학생선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학생 선수를 위한 학업 지원, 체육특기자 제도의 ‘장기간, 조금씩, 체계적인’ 개선 노력, 행정 조직의 협력적 가버넌스 구축, 학생 선수를 학생으로 바라보기 위해 관련 주체의 인식 변화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explore a desirable student athletic training plan via arrangement and analysis of materials in the point of historical view how the student athletic system has been changed in variety school physical education policies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At the results,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t was continued to make steady efforts to participate and promote student athletes, however, the problem of the disorganized and unified physical education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he pros and cons in the ‘student athletic system’ itself, cause that the student athlete has to give up their right as a student. Plus, this system has transformed student athletes who are aiming to only victory in the unbalanced development of the school athletic department as a machine to train only. For the better life for student athletes, it was suggested as below: academic support for student athlete; ‘long-term, little, systemic’ improvement efforts of student athlete system; establish cooperative governance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so on.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8067020).

Key words: Upbringing Environment for Korean Student Athletes, school physical education policies, student athletic

* pooh7936@gmail.com

I. 서론

2000년을 기점으로 학생선수에 대한 비교육적이며, 반인권적이고, 강압적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보고가 체육계, 방송,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물로 증폭되었고, 비교적 최근에 와서는 엘리트 체육정책의 대폭 수정 및 폐지를 요구하기(류태호, 2009; 손천택, 2009; 유정애, 2012; 한태룡 등, 2008, 2009)에까지 이르고 있다. 과거 국가주도의 스포츠정책을 시행하던 초기에는 학생선수육성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의문 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했으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한 수영선수의 태릉선수촌 입촌 거부와 이에 따른 수영연맹의 대표선수 자격박탈 사건으로 말미암아 학생선수를 운동만 하는 기계로서 바라보는 시각으로의 전환을 촉발시켰다. 이후 연이어 발생한 2003년 천안 초등학교 합숙소 화재사건, 2003년 전국체전 출전을 위한 무리한 체중감량으로 인한 고등학생 사망, 2006년 선배들의 열차려 중 목 부상으로 인한 전신마비 등 학생선수들의 운동부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비교육적, 반인권적 행위들에 대한 실태가 드러났으며, 학생선수의 대학입시 부정과 관련해서는 더욱 더 많은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체육계의 문제점들이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학생 선수들의 복지 혹은 인권을 고려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조남용, 이영국, 2013: 152).

최근 학교체육 분야는 국민적 관심과 변화의 요구를 많이 받아왔다. 학교체육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적 체육활동을 의미하는 것(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1항)으로, 학교체육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및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과 건전한 여가 문화 함양에 기여하며 평생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진연경, 2015: 13).

학교체육은 일반학생의 체육활동 및 학생선수의 스포츠활동에 관한 모든 정책을 포함한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학교가 국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장(場)이면서 동시에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교육 주체(학부모, 학교운동부 지도자, 교사 등)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 사회적 영향력과 기능은 국민 체육정책으로 확산되는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체육정책은 표면 그대로 학교체육정책으로만 보기 어렵다(권민정, 유정애, 2013: 257).

학교체육정책은 ‘운동하는 일반학생’과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라는 비전을 표방하며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일반학생의 건강권 및 운동권 문제와 함께, 학교운동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진연경, 2015: 12).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한다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현실적으로 학생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이유로 결과만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폐해 속에서 운동만을 강요당하며 비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학생선수는 학습권 침해, 중도탈락, 대인관계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선수 스스로 선택한 운동부 생활을 존중할 필요도 있지만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학과수업을 충실해야만 한다(장구민, 2010: 103).

학생 선수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학생선수 관련 선행연구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첫째, 학생선수의 학습권 문제(강병규, 2002; 강신욱, 2003; 송용관, 엄혁주, 신미진, 2010; 이학준, 2009; 임수원, 2011). 둘째, 학생선수의 중도탈락 문제(강신욱, 강미선, 1999; 임수원, 이정래, 2002; 최효진, 임수원, 권기남, 2008), 셋째, 학생선수의 진로 문제(서혜주, 임수원, 전원

재;2018 이양구, 권형일, 2015;), 넷째, 학생선수의 생활 및 학습실태(곽은창, 김용규, 주병하, 2011; 류태호, 이주욱, 2004; 백종수, 2004; 이학래, 고재곤, 1994)등으로 구분된다. 꾸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은 아직 제자리 걸음이다. 왜 변하지 않은 것인가? 학교체육의 학생선수 육성정책이 실효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학생선수 육성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광복 이후 실시되어 온 다양한 학교체육정책 중 학생선수 육성 환경(법·제도, 관련 조직, 대회, 주요 주체 등)이 어떻게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렀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자료를 정리,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학교체육과 모습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학생선수 육성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고 다양한 사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학생선수 육성 환경이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주된 사료로 학생선수 육성과 관련한 선행연구, 단행본,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학교체육정책 및 학생선수 육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고찰함으로써 첫째,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제도적(법·정책·행정기구) 측면에서 변천과정 탐색, 둘째,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대회 개최의 변천과정 탐색, 셋째, 이를 통해 바람직한 학생선수 육성 방안의 탐색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2000년대 중반이후 꾸준히 강조되어 오고 있는 학생선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정제되고 있는 지금, 과거 학생선수 관련 정책과 육성을 위한 노력들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되짚어보고 그 결과물이 학생선수 관련 정책의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자료

로써 활용되길 기대한다.

II. 학생선수 육성 환경 변화 탐색

본 장에서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법·제도, 관련 조직, 학생선수 참여 경기 대회의 세 가지 측면의 학생선수의 육성 환경 변화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광복이후 현재까지의 학생선수 육성 관련 주요 문서를 분석하였다.

1.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한 문서상의 노력

광복이후 학생운동경기대회 참가요령, 학교체육관리지침, 학교체육진흥법과 같은 대표성을 가진 정책 문서에는 학생 선수가 학생이자 선수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였다. 그러나 학생선수의 학업 참여와 증진을 위한 노력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학생운동경기대회 참가요령

광복이후 학교체육의 민주화, 즉 민주체육의 발전은 군국주의적 체육으로부터 스포츠 중심의 체육으로의 전환을 이루며 학교체육에서의 스포츠활동 강조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각 급 학교에서도 스포츠활동을 장려하는 과외특별활동에 대한 관심을 점차 확대해 나가게 되었다(이학래, 2000: 378). 한편, 전국체육대회가 도 대항으로 진행되면서 중·고등학생 선수들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고, 경기 중에 과열현상을 빚게 되자 문교부는 학교체육의 정화차원에서 선수자격과 출장 원칙, 참가대회의 범위 등을 규정하게 된다.

1958년 9월 20일자로 개정 발표된 ‘학생운동경기대회 참가요령 개정요강’에 따르면, 각종 교외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만 했다. 또 출석 불량자와 학업 불량자, 그리고 처벌을 받은 학생은 선수자격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선수 출장도 수업에 지장이 없는 때에 한해 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응원단 동원도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되 결승전은 예외로 했다(나현성, 1970; 154).

참가대회의 범위는 전국체육대회와 각종 선수권대회 및 학교 간 친목경기대회 가운데 문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한 대회에 한하도록 했고, 동일종목에 대해서는 연 5회 이내로 횟수를 제한했다. 예컨대, 배재중학교의 경우를 보면, 1954년 중점실천계획의 일환으로 기계체조부를 확충했고, 경기고등학교는 피난지인 부산에서 1951년 11월 2일 교내체육대회를 열어 전교생이 배구시합을 가졌다. 동래고등학교는 1951년 3월 체육반 부서를 조직했고, 성남중학교는 운동회에 마라톤을 넣었으며, 여산중학교는 방과 후에 태권도를 실시했다. 휘문의 경우, 선수와 비선수 모두에게 운동부가 개방되어 과외체육활동이 왕성하게 실시되었다(이학래, 2000: 378).

이처럼 광복 이후 6·25 한국전쟁을 겪는 혼란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학교체육에서의 과외체육 활동이 선수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을 우선시하여 학교 나름으로의 특성을 나타내며 일반학생들 모두가 참여하는 모습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2) 1991년 학교체육관리지침

1982년 3월 20일 체육부 창설과 더불어 그 동안 문교부에서 담당해 오던 학교체육 업무는 체육부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체육부 체육진흥국에 학교체육과가 설치되어 학교체육 업무를 전담했

다. 그러나 88서울올림픽 이후 체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1990년 2월 12일에 체육부 직제가 개정될 때 학교체육과는 폐지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학교체육 업무가 혼선을 빚게 되자 1991년 체육청소년부에 들어와서는 매년 연초에 학교체육 관리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에 학교체육업무의 혼선을 막고자 했다(한겨레신문, 1991년 3월 13일).

체육청소년부는 학교체육 관리지침을 통해 체육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체육수업의 정상적 운영, 체육교사의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 방안, 체육연구 및 시범학교 운영의 내실화,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체육에 대한 인식 제고, 학교체육진흥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확대, 학생선수 육성 및 학생 출전 경기대회 운영지침, 체육활동 우수학교 및 체육유공자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시달했다(체육청소년부, 1993). <표 1>은 1993년 학교체육 관리지침 중 학생선수의 관리와 관련된 세부내용이다.

표 1. 1993년 학교체육관리지침

-
- 라. 學生選手の 管理
- 正規授業時間을 徹底히 履行(教育課程 履修)
 - 訓練은 特活時, 教科後, 休日 및 放學期間中 實施
 - 過多한 練習으로 인한 修業缺損이 없도록 함
 - 學校授業時間中の 轉地訓練 및 合宿訓練은 原則的으로 禁止하며, 可及的 放學期間中에 實施
 - 特技者中 學業成績이 不振하다고 判斷되는 者에 對하여는 學校長이 一定期間 選手活動을 制限할 수 있음
 - 學生選手가 他地域 轉學 및 上級學校 進學時 金品收受, 學父母의 利權介入, 過熱스카웃으로 인한 社會的 物議 등을 惹起하지 않도록 特技者管理에 徹底를 期하도록 하기 바람
 - 卒業前까지 實業 팀 등의 名義로 出戰할 수 없게 選手管理를 徹底히 하여야함.
 - 運動選手의 大會 出戰으로 인한 授業缺損은 學校長 責任下에 만드시 補充授業을 실시, 授業缺損으로 因한 學力低下를 最大限 防止하고, 授業缺損對策(예 : 特別學級編成, 個人指導 또는 放課後指導)과 그 遂行內容은 文書로서 保存.
-

자료출처 : 체육청소년부(1993).

<표 1>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해 훈련은 특별활동, 방과 후, 휴일,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고 특기자 선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방어적 차원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교부 산하 각 시·도 교육위원회의 통제 하에 있는 각급학교와 체육청소년부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에 그쳐 학생선수 육성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학교체육 관리지침은 1996년 폐지되었다.

3)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학교체육진흥법 제1조).

표 2.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관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학교체육진흥법은 2006년 3월 29일 한국체육학회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학교체육진흥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논의를 시작으로, 2009년 1월 민주당의 안민석 국회의원 등 15인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2010년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한나라당의 박영아 의원 등이 수정발의 하였으며, 2011년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국회의원 박영아·안민석 발의,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최)가 개최되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이 대안으로 발의하여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게 되었다(진연경, 2015: 114)

학교체육진흥법은 크게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학생의 건강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체육정책,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해 <표 1>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체육활동은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체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 학교체육활동 정책에서 소홀히 여겨졌던 여학생, 유아,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와 같은 정책들도 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학교체육진흥법은 법률로서는 명시적인 조항이 많고 시행령과 조례 등에 구체적인 부분을 상당히 위임하고 있어 학교체육진흥법 추진을 위한 조항 구체화와 추진환경을 정비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연기영, 2012b: 71), 학교체육진흥법의 시행으로 학교체육진흥정책의 안정적인 틀을 구축하고 학교체육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여 체계적인 학생체력 및 건강관리 등 보다 발전적인 학교체육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손석정, 2013: 48)

학교체육정책은 교육과정 수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교엘리트체육과 관련한 것이었지만 2005년 이후에는 그동안 정책의 관심에서 소외받았던 일반학생에게까지 정책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엘리트체육에서도 운동선수를 위한 정책에 ‘공부하는 학생

선수'가 강조되고 있는 것 역시 '운동선수'로만 바라보던 정책의 시각이 '학생 + 운동선수'라는 시각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흥덕기와 류태호(2007)도 학생 선수는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 복지차원에서 받을 권리를 찾아주자는 측면에서 호소력이 있으며, 운동하는 일반 학생 역시 체육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일깨우고 그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즉, 학교체육정책은 그동안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시각에서 '모두를 위한' 학교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와 관련된 정책상의 분리는 나타나고 있었다. '운동하는 일반학생'과 '공부하는 학생선수' 역시 학생과 '모두를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외연적으로는 학생과 선수를 위한 정책이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옥(2015)은 '공부하는 학생선수/운동하는 일반 학생'의 정책 슬로건은 기존의 정책들과는 다른 진일보한 인식의 변화이며 체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의 간극을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고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접근 자체가 학생/선수를 구분하고 체육/공부를 구분하는 이분법적(二分法的) 사고의 테두리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였다. 또한 체육 역시 엄연한 교과이며 공부할 대상이라는 본질을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현재는 공부와 운동이 완전 분리된 기존의 인식을 개선하는 과도기적 시점으로 앞으로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종영(2011) 역시 학원스포츠와 분리된 학교체육을 지탄하며 일반학생은 학교운동부에 속하기 어려운 현실과 체육을 통한 교육적 성장의 효과가 운동선수에게 나타나지 못하고, 학원스포츠가 단지 대학을 가려는 운동선수와 정부 엘리트스포츠 정책만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꼬집

었다.

2. 학교체육과 학원스포츠의 분리

본 절에서는 체육관련 행정 조직의 측면에서 학생선수가 왜 학생 보다는 운동선수의 역할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1) 대한학교 체육회

1956년 4월 14일 임의단체로 설립된 대학학교 체육회는 체육교사의 자질 향상과 학원체육의 정상화를 통한 국민체육 향상과 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1965년 3월 17일에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문교부로부터 받았다. 이로 인해 통합기구였던 대한체육회는 올림픽사업을 전담하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학원스포츠를 담당하는 학교체육회가 분리됨으로써 그 사업의 관장범위가 줄어들거나 상호 중복되었다(동아일보, 1965년 3월 20일).

대한학교체육회는 학교체육의 진정한 가치를 외면하고 각종 경기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이 대한체육회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각종 경기대회들도 학교체육의 연장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한체육회와 대립하였다.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이 체육회의 각 시, 도지부와 학교체육회 지부기관의 마찰로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기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학교체육과 일반체육 간의 횡적 연결미비로 위축일로에 있음을 지적, 이를 시정하고 명확한 관계를 제시해 주도록 문교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동아일보, 1966.10.5)

대한학교체육회는 학생의 전인적 교육을 위해 수업 결손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중앙의 경기 통합단체가 주최하는 종목별 경기에 연간 출장횟수를 제한하거나 자제시키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 대한체육회로서는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한 체육회는 마스크를 앞세워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통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대정부 건의를 거듭했다. 그 결과, 획일주의를 선호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3개 체육단체의 통합을 지시했고, 통합의 수순으로 1967년 초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체육행정의 개선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체육단체 다원화 현상에 따라 일어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체육단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968년 2월 대통령의 체육단체기구 일원화의 지시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 대한학교체육회 등 3개 단체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로 통합되었다. 대한체육회는 학교체육회가 통합되자 그 기능을 존중한다는 의도에서 개정정관에 사회체육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3대 주요 위원회를 설치해 명시하면서 부족하나마 학교체육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요사업에서 배제되며 학교체육사업은 실종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일었다(이학래, 2000: 410).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학생 선수들은 교육부와 문체부의 분리된 제도 내에서 양성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분리 혹은 비균형적 통합은 학생선수의 입장에서 학생이자 선수로서 행정 조직의 지원을 받기 보다는 학생의 역할과 선수의 역할을 분리 지원받게 되고, 학생의 역할에 소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3. ‘체육특기자 제도’의 명(明)과 암(暗)

학생선수가 학생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

는 것의 핵심은 체육특기자 제도라 할 수 있다. 체육 특기자 제도는 1972년 10월 5일 체육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기량이 우수한 선수들의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으로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유능한 체육지도자 양성에 두었다(한대룡 등 2011: 37).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학업성적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경기실적을 보유하면 상급학교 진학허용 및 등록금과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는 학생선수들이 학업을 등한시하고 운동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듬해 ‘병역특례제도’의 도입은 초·중·고·대학 재학시절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운동기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조남용, 이영구, 2013 : 154). 학생 선수를 국위선양의 수단으로 본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인 체육특기자 제도로 체육특기자의 상급대학진학에서의 부정입학 및 금품 수수가 1997년 이후 급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체육특기생 배출을 위하여 정규교과시간을 훈련으로 전용하고, 합숙 등의 단체 생활을 부과해야 했으며, 훈련과정에서 경기력 제고를 위한 구타, (성)폭행 등의 반인권적 행위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에게 운동선수로서의 기능만을 강요한 체육특기자 제도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학생임을 포기하고 체육특기자로서 얻는 대학 입시에서의 특혜, 낮은 확률이지만 운동선수로 성공할 경우 따라오는 막대한 부와 명예 등은 학생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관련 기관 및 제도 등이 체육특기자 제도를 쉽게 놓지 못하는 복합적 연결고리를 생성하였다. 학교체육진흥법과 같은 법도 이들의 인식과 성공지향적 목표의식을 변화시키는데 큰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2016년 정유라의 대학입시 비리 사건은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도록 하였지만, 체육특기자 제

도 자체가 가진 본질적 특성은 학생 선수가 학생으로 성장할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4.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존재

전국소년 체육대회는 학생선수 육성에서의 주요 환경 요소라 볼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생이 참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역사적 흐름을 반추해 보는 것은 변화를 모색하는 현재를 통찰하는 좋은 사료가 될 수 있다.

전국체육대회는 규모가 해마다 팽창하면서 제 52회 대회부터 서울에서조차 이를 소화할 능력이 모자란다는 판단에 따라, 1972년 전국체육대회에서 분리돼 따로 전국 규모로 개최된 주니어종합경기대회다. 그러던 중 1988년 제17회 대회를 끝으로 전국규모의 대회로서는 종말을 고하고, 1989년부터는 각 시·도 주최의 지방대회로 격하되었다 (이학래, 2000: 435).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비대해진 전국체육대회의 개선책으로 중학교 및 초등학교 5, 6학년 을 분리해 열기로 한 소년체전의 명칭을 ‘스포츠소년대회’로 결정하고 제1회 대회를 6월 중 서울에서 4일간 열기로 최종 확정되었다.(경향신문, 1972년 3월 3일)

1972년 첫 대회의 정식 명칭은 ‘스포츠소년단 창단 기념 제1회 전국 스포츠소년대회’였다. 이와 같은 대회명의 시작은 일본의 영향이 컸다. 이 무렵 일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던 스포츠소년단을 국내에 도입해 전국체육대회의 비대회를 막는 방안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 이 대회의 명칭은 1974년 제3회 대회까지 사용하다 스포츠소년단 창단이 재정 문제 등으로 흐지부지되자 1975년 제4회부터 ‘전국소년체육대회’로 바뀌었다. 제

1회 대회에서는 스포츠소년단 단기가 계양되고 단복과 단모를 착용한 선수단이 입장했다. 대회 구호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으로 한동안 스포츠팬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친숙한 문구가 됐다(대한체육회, 2010: 283).

표 3. 전국소년체육대회 시기별 대회의 특징

년도 회차	지역	특징
1972 1회	서울	전국 스포츠 소년체육대회 서울운동장에서 19개 종목 실시 시·도간 체육기능의 평준화 부정선수 출전
1973 2회	대전	성화의 등장 (충남 아산의 현충사에서 채화) 중학교 사격경기 추가 제일동포 선수단 출전
1974 3회	서울	우승에 집착한 부정선수 출전 · 중학교 사이클, 궁도경기 추가
1975 4회	부산	“전국소년체전”으로 대회명 개정 성화 채화 장소의 단일화(경주)
1976 5회	서울	체육소년단 단복을 실용적으로 수정 하키경기 종목에서 제외
1978 7회	대구	부정선수 관계규정 강화 부적격 선수 경기물수 및 다음 대회 참가 금지
1979 8회	충북	수영경기, 전국체육대회에서 실시 재미동포 선수단 출전
1980 9회	춘천 원주	시, 도간 종합 순위제 폐지
1981 10회	광주 목포	하키종목 정식 종목 메달집계를 일체 하지 않음 (대회신기록과 최고기록만 집계)
1982 11회	대전	시, 도간 종합 순위제 부활 복싱, 레슬링, 유도의 정식 종목 추진
1983 12회	전북	수영경기의 재통합 레슬링 정식 종목
1984 13회	청주	초등 씨름 정식종목, 육상 400m 폐지 중학교부 복싱, 역도 정식 종목 ‘88올림픽꿈나무 발굴대회’를 겸하여 실시
1985 14회	경북	중소 도시에서 개최된 최초의 대회 초등학교부 테니스가 정식종목
1986 15회	분산	전국 12개 도시에서 분산개최 소년체전의 부대행사 제외한 경기 위주의 행사

1987 16회	분산	14개 시도에서 분산개최 개, 폐회식의 부활 대회 기간 중 전국 어린이미술대회 개최
1988 17회	분산	개, 폐회식 성화행사 폐지 시, 도별 종합포상 폐지 전국단위 소년체육대회 폐지
1989 18회	시·도 별	시, 도별 소년체전으로 전환 시, 도간 과열 경쟁 및 과다경비지출을 이유로 전환
1992 21회	분산	전국단위 소년체육대회의 부활 (시, 도별 체전으로 존속)
1993 22회	분산	서울, 경기일원 개최 종목별 개최식 실시(수업결손의 최소화) 종목별 최우수선수상 신설 개·폐회식 종목별 운영, 행사의 간소화
1994 23회	광주	전년도 전국체전 개최지에서 익년도 전국소년체전 개최 명문화
1995 24회	대전	개인시상식만 실시
1996 25회	경북	IOC 어린이 미술대회 병행개최 국민학교부를 초등학교부로 변경 체육장학금 수혜자 확대 미술대회 개최
1997 26회	강원 도	시, 도별 메달집계발표 폐지 조정, 로울러, 카누 시범 종목 IOC 어린이 미술대회 병행 개최
1998 27회	경상 남도	16개 시도 참가(울산광역시) IOC 어린이 미술 대회 및 청소년 문화예술행사와 연계
1999 28회	제주 도	롤러, 카누 정식종목 채택 IOC 어린이 미술 대회 병행 개최
2000 29회	인천	특수시설의 타지역 분산 개최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 실시
2001 30회	부산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준비점검 볼링, 시범종목
2002 31회	충청 남도	충남, 대전 분리후 처음 개최 대회 마스크트(귀둘이) 채택

자료출처 : 대한체육회 90년사(2010)

이렇게 시작된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그 나름으로 우선선수의 조기 발굴과 육성 및 경기력 향상,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스포츠의 균형 발전 등의 순기능적 역할을 했지만, 행사의 비대화에 따른 개최지의 재정부담 가중과 시·도 사이의 과열경쟁에 따른 무리한 훈련으로 어린 선수들의

정상발육이 부진해지고 학력이 저하된다는 역기능이 부각되는 등 문제를 드러냈다.

무엇보다도 교육적 의미를 벗어난 과열경쟁이 가장 큰 문제였다. 과열경쟁 현상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의 오류가 빚어낸 측면이었다. 예컨대, 가장 작은 도인 충청북도가 계속해서 7연패를 하자(매일경제, 1979년 6월 2일)다른 시·도 교육위원회가 자존심을 상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경쟁으로 치닫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대회참가요강에 따르면 개인경기가 아닌 팀 경기는 반드시 시·군 예선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과열로 인한 각 시·도 교육위원회는 경기종목별로 주축을 이룰 수 있는 학교에 집중 지원하는 방법을 동원했던 것이다. 예선을 거쳐 전국대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려던 의도를 전적으로 무시한 것이었다.

과열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500개가 넘었던 핸드볼팀이 집중 지원을 받는 주축교 제도가 일반화되자 50여개 이하로 급감하는 역기능 현상을 빚었고, 이러한 등록 팀의 급감 현상은 다른 종목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즉, 과거 어느 시·도 내에 중학교 배구팀이 수십 개의 팀이 있었다고 한다면, 최우수팀을 만들기 위해 각 팀에서 포지션 별로 우수선수들을 한 학교에 모이게 해 집중적인 강화훈련을 실시하여 대표팀으로 출전시키게 되자 여타의 팀들은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줄줄이 해체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결국 어느 주축교가 중심이 되어 최우수팀을 확보하는 방식은 기존 팀들의 해체를 불가피하게 만들고만 것이다(이학래, 2000: 438). 결국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교육 효과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시각으로 1988년 전국 규모의 소년체육대회 개최를 중단하고 1991년까지 시·도 단위의 소규모 행사로 치러졌다.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전국소년체육대회의 폐지로 각급 학교 체육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고 종목별 등록 선수와

등록 퍽이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스포츠 발전에 역행한다는 일선 지도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4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다(대한체육회, 2010: 326). 이렇게 부활된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1999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16개 시·도 선수단 및 재미동포 선수단 1만3,7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개최되며(동아일보, 1999. 6. 1). 점차 본래의 모습으로 규모가 확장되어 갔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출전 선수들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휴일과 주말을 활용하여 대회를 개최하였지만 예상했던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후에도 지금까지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여전히 과열된 지도자들의 승부욕,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침해, 소수 엘리트선수 중심의 운영으로 인한 학교체육의 과행운영, 지역 간의 경쟁심화 등 교육적 측면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종합경기대회를 위한 경기장 개축 및 신축에 따른 비용의 증가, 국가의 예산 지원의 체계가 불분명하여 이중부담 및 중복부담 가중, 대회 주관 시·도교육청의 업무과중, 대회 참가비 및 훈련비 지급 규모의 한계 노출 등의 행정·재정적 문제점들도 야기하고 있어 또다시 폐지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Ⅲ. 학생선수 육성 환경의 발전방안

학생선수의 학생이자 선수로서의 삶을 위해 본 장에서는 첫째, 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학생 선수를 위한 학업 지원, 체육특기자 제도의 ‘장기간, 조금씩, 체계적인’ 개선 노력, 둘째, 행정 조직의 협력적 가버너스 구축, 마지막으로 학생 선수를 학생으로 바라보기 위해 관련 주체의 인식 변화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법·제도의 방향성에서의 변화 모색

연구결과 학생선수와 관련한 법 제도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변화의 체감은 그리 크지 않다. 오랜 시간 ‘체육특기자 제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체육특기자 제도가 가져온 명과 암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200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학교스포츠 클럽 관련 정책은 궁극적으로 학교 내 운동부와 일반학생의 생활체육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김선희, 허현미, 2008: 351). 그러나 우리는 오랜 기간 체육특기자 제도에 익숙해져 있고, 이로 인해 외적으로는 스포츠가 크게 성장하였다. 체육특기자 제도에 문제가 많지만 지금 당장 제도를 없애기엔 어려움이 있다. 너무 많은 사람(관련 직업)과 조직이 얽혀있고, 급진적으로 변화를 한다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드시 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씩 차근차근 장기적 관점에서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체육특기자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최저학력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선수에게 시행된 최저학력제의 명칭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을 삭제하고 제도가 본질적으로 가진 ‘기초학력 습득을 통한 생애 역량 구축’이라는 의미에 다가서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유정애, 2017: 7). 더불어 방향성에 있어서도 학생선수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역량중심의 접근 필요하다. 갑자기 시행된 최저학력제는 국영수사과 등의 일반적으로 주요과목으로 인식되는 과목을 학생 선수를 위한 기초 과목으로 판단하였다. 일반 학생들에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해서 학생선수에게도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학습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학생 선수들이 삶에 있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교육을

시도해야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선과 대회 개최에서부터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운영 분석을 통한 초·중·고 학생선수 참가 체육대회 모델 개발”과 관련한 연구(교육부, 2018)를 수행 중에 있다. 그 동안 소년체육대회의 여러 문제를 개선하고, 운동선수가 아닌 학생선수가 참가하는 대회로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러한 작은 변화의 시작이 향후에는 체육특기자 제도 시행 이전으로, 즉, 학생과 선수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운동하고 모두가 공부하는 학교체육의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2. 행정 조직의 변화 모색

연구 결과 우리나라 행정 조직의 분리와 형식적 통합은 학생 선수를 위해 또는 모든 국민을 위해 이롭지 못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 간의 경쟁과 서로의 이해관계는 사실 제도의 발전을 가져온다. 그러나 그동안 간과한 것이 있다. 바로, 조직 간의 협력이다.

학생 선수가 학생과 선수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 조직의 외적인 형태보다는 그들의 내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요구된다. 외적으로 통합이 되던 분리가 되든지 간에 학생선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의 개선을 위해 모든 관련 조직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어야 한다. 협력을 위한 마음가짐이 없이 학생선수를 위해 조직이 ‘분리 되어야 한다.’ 혹은 ‘통합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2016년 대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통합하였다.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외적인 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게 할 경우 생활체육부문의 축소 내지

약화를 가져올 것이며 엘리트체육 또한 현재도 국내체육은 도외시하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의 참가에 주력하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대통합을 할 경우에도 국내체육진흥에는 한계를 가질 것이란 지적(이창섭, 2005)을 받고 있다. 이는 일선 학교 내 일반학생들의 운동권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서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과거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체육관련 조직은 서로가 경쟁자였다. 그러다 보니 피해는 학생선수가 고스란히 받았다. 당장 일원화된 조직이 구축될 수 없다면, 각 기관들 간에 올바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서로가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올바른 인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3. 학생선수 관련 주요 주체의 인식 변화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정책과 제도는 대학 입시와 닿아있다. 본 연구에서도 문제시 했던 체육특기자 제도 역시 그 끝은 병역면제와 대입에서의 특혜이다. 한 신문기사에서 학생 선수들이 운동만 할 수 밖에 없는 교육 주체의 인식을 고스란히 찾을 수 있다.

체육 특기자가 아니면 내신과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하는 현실에서 운동선수가 일반 학생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자체가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하소연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주일보, 2018.5.21)

학생선수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인식 변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선수의 학부모들은 체육특기자 제도를 통해 운동선수로 키워서 대학을 가도록 하고, 등록금도 면제 받는 특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또한 체육

특기자인데 왜 안되느냐? 는 안하무인 식의 인식은 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체육특기자들이 억지로 국가의 억압에 의해 체육특기자로 희생하며 생활하는 것이라는 시각에서 탈피해야한다. 어찌 되었건 그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운동을 특기로 하는 학생이 된 것이다. 그들만을 위해 수많은 재정적 지원을 쏟아 부을 수도 없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혹은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학생 선수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며 학교 외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사비를 들여 학원을 수강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 선수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체육을 특기로 하는, 운동만 하면 국가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특별한 우리 아이’ 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학부모가 먼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식을 변화하고 사회의 인식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선두에 서야할 것이다.

더불어 이와 관련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에서 학부모와 지도자의 인식 변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학생선수의 올바른 육성 환경을 모색하기 위해 역사적 사료를 고찰하고 현실적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문서상으로는 학생선수의 학업 참여와 증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지속하였지만, 체계적이고 일원화 되지 못한 체육 행정 조직의 문제, ‘체육특기자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명(明)과 암(暗)은 학생 선수가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를 낳으며 문서상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였다. 또한 이 제도는 학교운동부의 비

균형적 발전과 각종 대회에서 승리와 우승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선수들을 운동만하는 기계로 변질시켰다. 향후 학생 선수의 올바른 삶을 위해 관련 행정 조직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학업 지원, 체육 특기자 제도의 ‘장기간, 조금씩,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를 위해서는 학생 선수를 학생으로 바라보는 관련 주체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논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스포츠 강국이다. 그러나 스포츠 선진국은 아니다. 체육특기자 제도로 양성된 엘리트 선수들은 국제대회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나라를 스포츠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아이러니 하게도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운동을 선택하는 순간 운동만을 해야 하는 비합리적 행태는, 이 소수의 선수들에게 엄청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모두가 스포츠를 즐기며 생활하는 사회인 스포츠 선진국 만드는데 역으로 작용한다. 최근 체육 특기자로 상급학교 진학 시 내신 성적을 필히 반영할 것이라는 계획(교육부, 2017)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어 학생선수가 학생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학생 선수 혹은 국가 체육 정책 입안자들은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통한 반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체의 통합과 분리는 이전에도 일어났지만 실질적이지 못해 결국 ‘여기 저기’에서 정책을 흠뻑리다보니 의미 있는 발전이 되지 못했다. 과거를 되짚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실질적 방안은 찾지 못한 채 여전히 밥그릇 싸움뿐인 현실은 암울하다. 관련 기관과 단체, 학부모 지도자들의 반성이 필요하

다. 학생 선수가 운동에만 ‘올인’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 과연 학생 선수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었는지 역사 속에서 되짚어 보고, 보다 그들의 미래에 보탬이 되는 방안 마련을 위한 모두가 합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소년체전의 통폐합, 법제도의 개선 등은 학생 선수 육성 제도의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최근의 학생선수를 위한 노력이 비단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과거의 경험을 고스란히 재생산 할 것인가?’는 고민해 볼 문제이다. 과거의 실패를 재생산하지 않기 위해, 더 불어 궁극적으로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책 입안자, 학부모, 지도자, 학생 등 관련 주체 모두의 반성에서 시작된 발전의 노력이 더해질 것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구민(2010). 학생선수와 학습권에 대한 헌법적 함의. **스포츠와 법**, 13(4).
- 강병규(2002). **중학교 체육특기자들의 학교수업참여 실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신욱·강미선(1999). 운동선수의 학업 태만과 중도 탈락에 관한 일례.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2.
- 강신욱(2003). 학교 운동부의 운동과 학업 수행 및 운영 실태조사. **한국체육학회지**, 44(5).
- 곽은창·김용규·주병하(2011). 우리나라 중·고교 학생선수들의 학습환경 실태 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8(1).
- 경향신문. 1949년 10월 11일.
- 경향신문. 1972년 3월 3일.
- 교육부(2013b).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 교육부.
- 교육부(2016).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 교육부.
- 교육부(2018). **2018년도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교육부 공고 제2018-64호). 교육부.
- 교육부(2017).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 보도자료** (2017년 4월 10). 교육부.
- 곽형기(1989). **근대 학교체육의 전개양상과 체육사적 의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민정·유정애(2013). 우리나라 정부주도이 학교 체육정책 성과 평가. **체육과학연구**, 24(2)
- 김달우(1992). **해방이후 학교체육의 재편 및 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 1945년-1955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희·허현미(2008). 학교스포츠클럽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3(1)..
- 나현성(1970). **한국학교체육제도사**. 서울: 도서출판교육원.
- 대한체육회(1965). **대한체육회사**. 서울: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1990). **대한체육회 70년사**. 서울: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2010). **대한체육회 90년사**. 서울: 대한체육회.
- 동아일보, 1965년 3월 20일.
- 동아일보, 1966년 10월 5일.
- 동아일보, 1999년 6월 1일.
- 류태호(2003). **학교체육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류태호·이주욱(2004). 운동선수의 학교생활과 문화. **한국체육학회지**, 43(4).
- 매일경제. 1979년 6월 2일.
- 백종수(2004). 중학교 운동선수들의 수업참여 실태 및 인식도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8(4).
- 서혜주·임수원·전원재(2018). 중도탈락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진로탐색 어려움과 우연적

- 사건 경험.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1(1).
- 손석정 · 이재구 · 신진균(2013). 학교체육진흥법 시행이후의 전개과정 고찰. **스포츠와 법**, 16(4).
- 손천택(2009). 체육특기자제도가 문제점 미 제도껏 개선 방안. **제2회 스포츠인원정책포럼**.
- 송용관 · 엄혁주 · 신미진(2010). 운동중도탈락 체육특기자들의 학교 학습경험에 대한 이해: 학습권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1).
- 안양옥(2015). 올바른 학교체육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체육 정책. **2015 학교체육진흥세미나**. 한국체육학회.
- 연기영(2012b).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스포츠와 법**, 15(2).
- 유정애(2012). 학생 선수의 학습 역량 계발을 위한 교육 방향과 과제. **한국체육학회지**, 51(3).
- 유정애(2017). 우리나라 학교체육 환경변화에 따른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방향.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5(4). 1-14.
- 이양구 · 권형일(2015).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한 학생선수의 체육 · 스포츠 진로결정유형 분류 방안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2(2).
- 이종영(2011).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과제와 방향. 국회선정기념관 대강당.
- 이학래(2000). **韓國體育百年史**. 서울: 사단법인 한국체육학회.
- 이학래 · 고재곤(1994). 대학 운동선수들의 학교 생활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체육학회지**, 33(3).
- 이학준(2009).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근거와 대안. **한국체육학회지**, 48(5).
- 임수원(2011).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의 논리적 근거. **한국체육학회지**, 50(2).
- 제주일보. 2018년 5월 21일.
- 조남용 · 이영국(2013). 국가주도 학생선수 육성제도의 개념과 현실을 토대로 한 개선방향 탐색.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9(3).
- 진연경(2015). **우리나라 국가수준 학교체육정책 분석 및 평가(2005년-2014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진연경(2015). 학교체육정책 평가모형 개발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2(4).
- 진연경(2017). 정책사의 관점에서 본 학교체육정책 발전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5(2).
- 진연경 · 유정애(2015). 국가수준 학교체육정책의 내용과 성과 고찰. **교육과정평가연구원**, 18(3).
- 진연경 · 유정애(2016). 국가수준 학교체육정책 수립의 형성과정 이해. **한국체육학회지**, 55(2).
- 체육청소년부(1993). **학교체육관리지침**. 체육청소년부.
- 최효진 · 임수원 · 권기남(2008). 고등학교 중도 탈락 운동선수의 학교생활 적응과정.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3).
- 한겨레신문. 1991년 3월 13일.
- 한태룡 · 박영옥 · 김정효 · 이병준(2008). 학생선수의 학업활동 실태조사 및 최저학력제 도입타당성 연구. **체육과학연구원**.
- 한태룡 · 김미숙 · 서희진 · 김태의(2011).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체육과학연구원**.
- 홍덕기 · 류태호(2007). 인권으로 바라본 학생선수: 교육적 담론.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4(4).
- 논문투고일: 2018년 05월 22일
심사완료일: 2018년 06월 27일
게재확정일: 2018년 06월 26일